

파주시설게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1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12월 10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우중호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의 위원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대상이 시의회의원,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, 박사학위 취득자 등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규모 및 성격으로 보아 위원회 위원장을 건설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실무경험이 많은 건설국장으로 하려는 것과
- 간사 및 서기도 도로건설담당과 담당직원에서 건설과장과 도로건설담당으로 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건설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 하려는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려는 것과(안 제2조 제2항)
- 간사 및 서기를 도로건설담당과 담당직원에서 건설과장과 도로건설담당으로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제1안)

수 정 안 대 비 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2조(위원회 구성) ②위원장은 <u>건설국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, 간사는 <u>도로건설담당</u>이 되며 서기는 <u>담당</u> 직원이 된다.	제2조(위원회 구성) ②----- <u>부시장</u> ----- -- <u>건설국장으로</u> 한다 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----- ----- <u>건설과장</u>-----<u>도로건설</u> <u>담당</u>----- .